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권순선, 권영희,
김경영, 김정환, 김제리,
김창원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문병훈, 박기재,
박상구, 서윤기, 성흠제,
송명화, 송정빈, 양민규,
오중석, 이승미, 이영실,
이현찬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조상호, 채유미,
최 선, 한기영, 황규복,
황인구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장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.
-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권한을 규정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나. 학생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함(안 제11조의2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과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학교장의 자체해결)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.

1.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
2.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

제10조제2항 중 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”을 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 (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) ①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·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대책”을 “대책 마련과 심의위원회 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의2(학교장의 자체해결) ① 법 제 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</u> <u>2.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</u>
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</p> <p>② 교육감은 <u>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</u>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<u>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.</u></p>	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</p> <p>② -----<u>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</u>-----<u>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11조의2(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)</u></p> <p><u>①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</u></p>

	<p>② <u>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·</u> <u>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</u> <u>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</u> <u>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 교육감 은 학교폭력예방 및 <u>대책</u>을 위 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 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 ----- -----<u>대책</u> 마 <u>련과 심의위원회 운영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